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타켓 마케팅(ADEX 2025)

참가 수혜기업 모집공고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체 마케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내 우주항공산업에 시장 수요자(산업체) 중심의 홍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참가기업 모집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천지역 항공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지역	행사명	추진일정	모집기업	지원내용
서울	서울 ADEX 2025	'25. 10.20(월) ~10.24(금)	사천시 소재 항공 중소·중견기업 12개사 내외	사천시 홍보관 설치 운영(100㎡)

○ 행사내용

- 서울 ADEX 2025 참가 및 B2B 상담
- 사천시 홍보관 설치·운영

2.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자격: 사천지역 내에 소재한 항공 중소·중견기업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서면제출(우편접수는 불가함)

- 이메일 접수: airshow@sacheonairshow.com
- 서면 접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2층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접수시간 평일 09:00~18:00)

-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서면 접수
- 이메일 접수후 담당자와 유선통화 필수(접수확인)

○ 일자별 세부계획

절차	일정	비고	주체
공고 및 지원 신청서 접수	7. 8~7.22	이메일 접수 및 서면 접수 (지원신청서 별첨)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			
선정평가	7.29(안)	서면평가(선정평가위원)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7.31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E-mail/유선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 평가방법: 서면/대면평가

- 서류검토: 제출 서류 기반으로 사전검토
- 선정평가: 외부위원 서면평가 진행

4.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단, 지원기관의 절차에 따라 지원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유사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에 의해 부적합 판정 시, 지원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사천시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 게재 및 수혜기업에 개별통보

○ 지원 제외 대상

- ①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 ⑥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지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⑧ 지원품목이 우주항공관련 부품이 아닌 경우

5.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김성건 에어쇼사업팀장	055-831-2064	airshow@sacheonairshow.com

2025년7월8일

사천에어쇼추진위원장

붙임 1. 기본지원서, 활동계획서 각 1부

붙임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붙임1>

2025. 00. 00.(00) 작성자: 000 직함 (055-000-0000)

1.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티켓 마케팅(ADEX2025)기본지원서

(1) 지원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주소)	(본사) (연구소)		국문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24년)	백만원	*수출액('24)	간접	백만원
					직접	백만원
업종						
사업분야				종업원	명	
담당자	소속부서(직위)			성명		
	회사전화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대표자)		E-mail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2) 기타 현황

수주계약실적 (‘22~’24, 고객사명/제품명/금액(USD))	('22)		
	('23)		
	('24) *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RFP/RFQ 입수실적 (‘22~’24)			
기타	명칭	행사명	참여건수
	**국내마케팅 행사 참여('22~'24)		
	국외 마케팅행사 참여('22~'24)		

* 수출액 : 간접 - 국내기업을 통한 간접수출, 직접 - 국내기업과 별개의 직접수출

** 국내에서 실시하는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상담회, 서울 ADEX

2.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타켓 마케팅(ADEX2025) 활동계획서

1. 목적 및 필요성

- 참가하고자 하는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

2. 수주 활동 대상

- 수주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분야 또는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작성

3. 수주관련 주요 보유 인증

- 수주하고자 하는 제품, 분야, 공정, 서비스와 관련된 보유 인증 작성

4. 활동 계획

- 수주 활동 방안에 대하여 작성(ex, 대상 고객, 주요 협의 내용 등)

5. 기대효과

- 정성적 또는 정량적 기대효과 작성

<붙임2>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사천에어쇼추진위원장 귀하

- 본인은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티켓 마케팅(ADEX2025)」 제반서류(수행계획서, 재무제표 및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티켓 마케팅(ADEX2025)」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관리기관이 정한 주관 및 수행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티켓 마케팅(ADEX2025)」에 신청한 본인 및 당사는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귀 기관의 수혜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 및 결과보고 등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및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취득한 기밀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기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지원사업의 진행상 정책, 제반사항 및 자료제공, 성과물 제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청렴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6. 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받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만일 중복지원이 확인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 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유권 해석은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사업 관련 운영규정에 따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 및 기업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사천에어쇼추진위원장 원장 귀하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 및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기관)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을 환수 및 범죄협약이 있을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사천에어쇼추진위원장 귀하

<첨부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지원신청 내용에 대해 여타 정부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본 확인서의 작성자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의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사천에어쇼추진위원장 귀하		